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이 근거 조문 폐지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소속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,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기능 변경에 따라 명칭 또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기존 위원회 통합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명, 제1조, 제2조)

통상조약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 통합하게 되어 위원회 명칭 변경이 필요함

나. 정부위원 추가(안 제3조제2항제1호)

금융서비스 및 디지털 통상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함

다.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신설(안 제5조의4)

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폐지에 따라 동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, 000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3. 00. ~ 4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

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”을 “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”를 “통상협정대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”를 “통상협정대책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조약의 체결 지원, 국내 보완대책 마련,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”을 “그 밖에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, 통상조약 체결, 통상피해대응”으로, “필요하다고”를 “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국무차장, 공정거래위원회”를 “국무조정실차장,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, 개인정보보호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3(자문위원회)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자문위원회 위원은 통상조약 또는 투자협정, 무역 또는 투자, 국내산업, 홍보 또는 여론조사 등에 관한

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.

제5조의4(통상정책자문위원회)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.

1.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
2.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
3.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
4.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
5. 그 밖에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

②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.

③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.

1. 대외경제 및 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
3.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
4.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
④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상정책자문위원

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6조의2제2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공동위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”을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3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, 제5조의4에 따른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주요 심의결과 등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”를 “활동상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1조 본문 중 “위원회의 위원, 자문위원, 전문위원”을 “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분과위원회”를 “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및 민간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」에 따른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위원과 「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은 각각 이 영에 의해 통상협정대책위원회

위원과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202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」에 따라 위촉된 민간 공동위원장은 이 영에 따라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02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「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제26호 중 “통상협정 국내대책위원회”를 “통상협정대책위원회”로 한다.

② 「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중 “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”를 “통상협정대책위원회”로, “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(이하 “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통상협정대책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, 제7항 및 제19조의2제1항 중 “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”를 각각 “통상협정대책위원회”로 한다.

③ 「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,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통

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「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</u>	<u>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</u>
제1조(목적)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· 비준(批准)될 수 있도록 지원하 고,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 책 마련, 통상피해대응에 필요 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소속으로 <u>통상조약 국내대책 위원회</u> 를 둔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통상협정대책위원회</u> -----.
제2조(기능) <u>통상조약 국내대책위 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6. (생략) 7. <u>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통상조약의 체결 지원, 국내 보완대책 마 련,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 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</u>	제2조(기능) <u>통상협정대책위원회</u>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그 밖에 통상정책 수립 및 통 상협상 과정, 통상조약 체결, 통상피해대응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심의 또는 자문이 필 요하다고</u> ----- --

제3조(구성) ① (생략)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정부위원: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, 교육부차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,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, 농림축산식품부차관, 보건복지부차관, 환경부차관, 고용노동부차관,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, 해양수산부차관, 중소벤처기업부차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관세청장,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차장,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산업통상자원정책 담당 비서관

2. (생략)

③ (생략)

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_____
_____.

1. -----

----- 국무조정실차장, 공정
거래위원회 부위원장, 금융위
원회 부위원장, 개인정보보호
위원회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제5조의3(자문위원회) 위원회는
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자문하기
위하여 필요하면 자문위원회를
둘 수 있다. 자문위원회 위원은
통상조약 또는 투자협정, 무역
또는 투자, 국내산업, 홍보 또는
여론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
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
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.

제5조의4(통상정책자문위원회) ①
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자
문하기 위하여 통상정책자문위
원회를 둔다.

1.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
본방향
2.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
결의 타당성
3.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
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
대책
4.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
5. 그 밖에 통상정책 및 통상협
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
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

②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
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

위원으로 구성하며,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.

③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.

1. 대외경제 및 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적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

3.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

4.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
④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상정책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.

<삭 제>

제6조(자문위원 등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

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통상조약과 관련된 국내 여론수렴과 홍보 등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·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③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은 통상조약 또는 투자협정, 무역 또는 투자, 국내산업, 홍보 또는 여론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6조의2(위원의 해촉) ① (생략)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공동위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(추진 상황의 보고) 위원회는 통상조약 추진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상황과 위원회의 주요 심의결과 등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

제6조의2(위원의 해촉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3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, 제5조의4에 따른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-----

-----.

제7조(추진 상황의 보고) -----

----- 활동
상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

<u>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	<u>다.</u>
제11조(수당 등) <u>위원회의 위원, 자문위원, 전문위원,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제11조(수당 등) <u>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2조(운영 세칙) 이 영에 규정 한 것 외에 <u>분과위원회의 설치, 구성·운영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.</u>	제12조(운영 세칙) ----- ----- <u>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팀	
연 락 처	(044) 203 - 5762